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57403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하우원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소370289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8.
판 결 선 고	2026.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형가전제품·주방용품의 생산, 도·소매업, 국내시장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 한다)에서 소형가전제품·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 1. C(대표자: D,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판매하는 각종 제품들의 판매 상세페이지 등의 제작을 위한 콘텐츠 개발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 개발 용역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가 원고의 용역 의뢰에 따라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하는 내용의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C 간의 역할,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간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 내용)
1. 용역 기간: 2019. 1. 1.부터 2029. 12. 31.까지
2. 용역 장소: 서울 양천구 E빌딩 4층
3. 용역 내용: 원고의 제품 상세페이지 콘텐츠와 동영상 개발, 제작 및 제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제4조(용역 대금)
원고는 C에게 용역대금을 제작한 콘텐츠의 건수에 따라 계약한 금액을 익월 지급한다.
제5조(콘텐츠에 대한 권리)
1. C는 본 계약 용역에 따라 제작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소유권, 기타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위 콘텐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C는 본 조 제3항에 더하여 원고에게 저작물 양도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

다. 원고는 2020. 5. 11.경 C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F'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진, 문구 등을 결합한 판매 상세페이지(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제작·제공받아 2020. 5. 12.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다음 2020. 6. 8.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그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등록번호 G호).

라. 피고는 2022. 1. 20.경 피고가 H의 명의로 운영하는 'I'라는 명칭의 입점방식쇼핑몰(네이버스토어 입점, 이하 '피고 쇼핑몰'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제품을 소개하는 판매 상세페이지란에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시흥경찰서는 2022. 8.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판매 상세페이지란에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전혀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만 원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만 원 합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2조 제17, 18호에 따르면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가리킨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이 사건 저작물은 이 사건 제품의 기능, 장점, 작동법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창작자가 그 나름대로 사진, 영상, 문구 등을 배치·나열한 집합물이고, 소재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C(D)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모두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피고 쇼핑몰의 판매 상세페이지에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등 참조), C(D)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원고가 저작인격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제4항).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 경위 및 정도에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저작물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구매력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한 것이므로 그 통상적인 사용료를 산정할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지만,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게재한 기간과 그 기간 판매한 제품의 숫자 등 사용료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제출한 편집디자인 작업의뢰 견적서(갑 제5호증)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고(견적서에 이 사건 제품과는 무관한 '푸드스타일링'에 대한 공급가액도 포함되어 있다), 견적서에 불과하여 정확한 제작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콘텐츠 개발 용역 계약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C(D)가 일정 기간 제작한 콘텐츠의 건수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므로 원고가 2020. 4. 1. D에게 지급한 1,406,900원 전부를 이 사건 저작물의 제작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10. 15.(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5. 7. 8.(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7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정 혁

판사 김현지